

瑞山市保證債務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9. 7. 23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9. 7. 23
- 라. 上程日字 : 1999. 7. 27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企劃監査擔當官 金知榮)**

가. 提案理由

- 現行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중 채무보증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간소화시켜
  - 주민의 편의도모는 물론 보증채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동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토록되어 있는 채무보증신청서 제출시

- 첨부서류중 「사업계획서와 주채무발생시 원인관계서류」 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 동 조례안 제2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참고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함.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동 개정조례안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경우에 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채무보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 불필요한 첨부서류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은 물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조치이며,
  -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합당하다고 판단됨.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19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7.23.

#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
----------	----

제출년월일 : 1999. 7. 23.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개정 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의거 공익상 필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에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하는 경우 규제완화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편의 도모는 물론 보증채무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위함.

## 주요 골자

-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경우에 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주채무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기타 참고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함.

## 참고 자료

가. 근거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나. 입법예고 : 필요없음

다. 서산시규제개혁 심의회

- 심사 : '99. 6. 23
- 결과 : 완 화
- 자치단체별 행정규제 정비계획 시달 (기감05090 - 937('99.6.25))

##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생략)</p> <p>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2.(생략)</p> <p>3. 기타 참고 서류</p>	<p>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 - - - -</p> <p>1.~2. (현행과 같음)</p> <p>(삭제)</p>